

Q17 現在都外に住んでいますが、全日制の都立高校に応募できますか。

A17 入学日までに保護者(※1)と都内に転入することが確実な場合には、どの都立高校にも応募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一時的に都内に転入することがあっても、入学後再び都外に、志願者、保護者又は志願者と保護者が転居する予定のある場合には、応募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また、保護者が父母である場合であって、特別の事情(※2)により父母のどちらか一方が都内に転居できない場合は、その理由を明記するとともに必要な書類を提出して審査を受けた上で、応募資格を認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どのような場合でも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応募資格や必要な手続の詳細については、裏表紙に記載してある都立高校入試相談コーナー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1 保護者とは、本人に対し親権を行う者であって、原則として父母のことを言います。

※2 特別の事情の考え方

「特別の事情」とは、次の(1)～(3)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です。

(1) 父母のどちらか一方の都内に転入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が、介護、病気療養(又は出産)のためであり、志願者にとって、都内に転入(在住)する一方の保護者と同居した方が身上監護を受けられる場合

※ 病気療養については、志願者の保護者及び志願者の兄弟姉妹が病気療養中である場合を対象とします。

(2) 父母のどちらか一方の都内に転入する理由が、介護のためであり、志願者にとって、都内に転入する一方の保護者と同居した方が身上監護を受けられる場合

※ 介護については、志願者の2親等内の親族が、要介護2、3、4、5である場合を対象とします。要介護1、要支援1、2である場合、対象とはなりません。

(3) 日本国籍を有する志願者の父母のどちらか一方の都内に志願者と同居できない理由が、海外勤務の継続のためであり、志願者にとって、海外から都内に転入又は都内に在住する一方の保護者と同居した方が身上監護を受けられる場合。ただし、父母の両方が帰国できない場合は、保護者に代わる都内在住の身元引受人がいること、保護者(保護者が父母である場合は、父又は母の一方でよい。)が志願者の入学後1年以内に帰国し、都内に志願者と同居することが必要です。

◆ 応募資格が認められる事例

事例1 中学3年生である志願者は、一家でA県に在住しており、要介護5の認定を受けている祖父と同居している。父に都内勤務の命令が出され、A県からの通勤が困難なことから父のみが都内に転居することになった。母は、引き続き、祖父の介護に専念する必要があることから、父及び母は、志願者が父と同居する方が身上監護を受けられると判断し、中学校卒業を機に、志願者は父と都内で同居することとした。

事例2 中学3年生である志願者は、一家でB県に在住している。都内に在住する母方の祖母が要介護3の認定を受けたので、母は祖母を介護するため、都内の祖母宅で同居することとした。父は仕事の関係でB県に残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から、父及び母は、志願者が母と同居する方が身上監護を受けられると判断し、中学校卒業を機に、志願者は母と都内の祖母宅で同居することとした。

事例3 中学3年生である志願者は、一家でC県に在住し、祖母と同居している。母が病気療養中でC県内の病院に入院している中で、父に都内転勤の命令が出され、C県からの通勤が困難なことから父のみが先に都内へ転居した。母は令和6年4月1日以降も、C県内の病院に入院する予定であることから、父及び母は、志願者が父と同居する方が身上監護を受けられると判断し、中学校卒業を機に、志願者は父と都内で同居することとした。母は、病気が回復し次第、都内に転居する予定である。

※ 応募資格審査及び応募資格審査に係る提出書類について、詳しくは、11月上旬に発行予定の「令和6年度東京都立高等学校応募資格審査取扱要項」を確認してください。

Q17 현재 도교도 이외에 살고 있습니다만 전일제 도립고등학교에 응모할 수 있습니까?

A17 입학일까지 보호자(※1)와 도내에 전입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모든 도립 고등학교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도내에 전입하는 경우라도, 입학 후 다시 도외에, 지원자, 보호자 또는 지원자와 보호자가 이사할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또,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특별한 사정(※2)으로 부모의 어느 한 편이 도내에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이유를 명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응모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모자격과 필요한 수속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뒷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도립고등학교 입시상담코너에 문의해 주십시오.

※1 보호자란 학생 본인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분으로 원칙적으로 부모를 말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의 정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의(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부모의 어느 한 쪽이 도내에 전입할 수 없는 이유가 개호, 병 요양(또는 출산)을 위함이며 지원자가 도내에 전입(거주)하는 다른 한 쪽 보호자와 동거함으로써 신상 감독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 병 요양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보호자 및 지원자의 형제자매가 병 요양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부모의 어느 한 쪽이 도내에 전입하는 이유가 개호를 위함이며 지원자가 도내에 전입하는 보호자와 동거함으로써 신상 감독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 개호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2촌 내의 친족이 요간호 2, 3, 4, 5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간호 1, 요지원 1, 2인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일본국적을 가진 지원자 부모의 어느 한 쪽이 도내에서 지원자와 동거할 수 없는 이유가 해외 근무의 계속을 위함이며 지원자가 해외에서 도내에 전입 또는 거주하는 다른 한 쪽 보호자와 동거함으로써 신상 감독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단, 부모가 모두 귀국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를 대신할 도내 거주 의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보호자(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는 부 또는 모 한쪽으로도 됨)가 지원자 입학 후 1년 이내에 귀국하여 도내에서 지원자와 동거해야 합니다.

◆ 응모 자격이 인정되는 사례

사례 1 중학교 3학년인 지원자는 가족이 A 현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간호 5의 인정을 받은 조부와 동거하고 있다. 도내 근무 명령이 내려진 아버지는 A 현으로부터의 통근이 곤란하여 아버지만 도내로 이사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조부의 개호에 전념해야 하므로 아버지 및 어머니는 지원자가 아버지와 동거함이 신상 감독과 보호를 받게 된다고 판단하여 중학교 졸업을 계기로 지원자는 아버지와 도내에서 동거하기로 했다.

사례 2 중학교 3학년인 지원자는 가족이 B현에 거주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가의 조모가 요간호 3의 인정을 받으면서 어머니는 조모를 개호하기 위해 도내의 조모 집에서 동거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업무상 B 현에 남아야 하므로 아버지 및 어머니는 지원자가 어머니와 동거함이 신상 감독과 보호를 받게 된다고 판단하여 중학교 졸업을 계기로 지원자는 어머니와 도내의 조모 집에서 동거하기로 했다.

사례 3 중학교 3학년인 지원자는 가족이 C 현에 거주하며 조모와 동거하고 있다. 어머니가 병 요양 중으로 C 현 내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도내 전근의 명령으로 C 현으로부터의 통근이 곤란하여 아버지만 먼저 도내로 이사했다. 어머니는 2024년 4월 1일 이후도 C 현 내의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며 아버지 및 어머니는 지원자가 아버지와 동거함이 신상 감독과 보호를 받게 된다고 판단하여 중학교 졸업을 계기로 지원자는 아버지와 도내에서 동거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병이 회복하는 대로 도내로 이사할 예정이다.

※ 응모 자격 심사 및 응모 자격 심사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11월 상순에 발행되는 「2024년도 도교도립 고등학교 응모자격 심사 취급 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